#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과 그 해결방도

박사 부교수 정 춘 심

###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된 나라들이 실시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고금리정책 그리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계속 악화되는 교역조건과 대외채무의 엄청난 증대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제84권 57~58폐지)

현시기 국제무역분야에서 벌어지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치렬한 시장쟁탈전은 나라들사이의 무역에서 각이한 형태의 무역장벽을 산생시키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는것과 함께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무역장벽에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있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것은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경제적리익을 보장하고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나라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비관세장벽의 불 명확성과 해결방도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심화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대대적으로 적용되고있으며 그 원인이 매우 불명확하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비관세장벽은 국제무역에서 관세보다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요무역장벽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지난 몇십년동안 국제무역에서는 관세수준이 감소되고 대신에 비관세조치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례로 1994년부터 2004년기간에 국제무역에서 적용된 비관세장벽의 비률이 14%부터 85%까지 늘어났으며 그것은 계속 증대되고있다. 국제시장에서 《무역의 자유화》를 가장 많이 떠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2016년이후에도 호상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하였지만 비관세장벽을 없애지 못하고있다. 2018년 6월에 도이췰란드는 어느 한 나라가 취한 수입산자동차들과 그 부분품에 대한 《국가안전조사》조치에 의하여 자동차수출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가안전의 미명하에 적용한 비관세장벽이였다.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대대적으로 적용되고있는 원인은 일부 비관세장벽들이 그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제한효과로 나타날수 있기때문이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비관세장벽을 수입억제의 기본수단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은 그것이 관세보다 덜 명확하기때문이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를 관세가 아닌 다른 수입제한수단이라고 규정한것은 국제무역에서 수입국들이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을 조장할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은 비관세규정과의 호상관계에서 명백한 계선이 없는것과 관련 된다. 국제무역에서 수입국들은 비관세장벽과 비관세규정의 차이가 명백하지 못한 조건 을 리용하여 비관세규정들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즉 보호무역주의수단 으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음으로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였다.

우선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가 비관세규정인가 비관세장벽인가부터 결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비관세장벽들은 비관세규정들과 같지 않으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규정의 부분으로, 즉 비관세규정의 세부, 부분모임으로 될수 있다. 비관세규정들은 비관세장벽들과는 달리 결코 무역에서 《장벽》이 아니며 다만 정부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입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 조치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는 비관세장벽의 적용에 의한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상품의 량과 가격에서의 변동정도를 관세로 전환하는것이다.

선행리론에서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는 그 적용으로 산생되는 수입상품의 가격과 국 내수입대체상품생산기업의 생산자가격의 차이 혹은 국내가격과 국제시장가격사이의 차이 를 기초로 할수 있다고 하였다. 론문들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적용으로 인한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상품의 인위적인 가격등귀와 생산물공급의 결핍, 그로 인한 국내가격과 국제시 장가격사이의 차이는 《관세등가물》로 표준화할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원적인 수출 제한》과 같은 일부 비관세조치들도 수출관세만 한 규모로 모의할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비관세장벽이 불명확성을 가지며 그것이 무역제한수단으로 리용될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는 밝히였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해결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 2. 본 론

#### 2.1.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

국제무역에서는 수입국들이 비관세규정의 외피를 쓰고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것으로 하여 그것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산생되고있다.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은 우선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가 자국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 시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적용되고있는것이다.

국제무역에서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은 그 목적이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막으려는데 있지만 겉으로는 자국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외피를 쓰고 적용되고있다. 수입국들은 수입상품의 성능이나 안전성, 편리성, 형태 등이 자국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까다롭고 복잡하여 수출국이 과학적으로 판명하기도 힘들고실행하기도 어려운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여 그것이 비관세장벽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있다.

실례로 유럽동맹나라들이 내놓은 수입방직제품의 안전과 관련된《유럽생태표식규격》을 둘러싼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대립과 마찰을 들수 있다.

유럽동맹의 이 규정에는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로운 방직제품의 유해물질과 그 물질의 제한된 사용량에 대한 1 500여개나 되는 항목이 포함되여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 인증절차에서 통과된 방직제품에는 표식을 하도록 되여있다. 유럽동맹이 수입상품에 적용

하고있는 방직제품기술법규는 방직제품이 갖추어야 할 질적특성을 높은 수준에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수입국의 립장에서는 응당한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제품의 기술적특성을 너무도 많이 세분화한것으로 하여 매 지표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는것은 수출국으로서 는 도달하기 어려운것이다. 그리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유럽동맹의 방직제품수입규정은 자기 나라의 방직제품수출을 막기 위한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고있다.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은 또한 수입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국제적인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는 외피를 쓰고 적용되고있는것이다.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무역협정들과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위생과 관 련된 각이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규정들을 내놓고있다. 국제기구들에서 내놓은 규정들은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적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나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국제기구들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기술법규와 안전규정을 자국시장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실례로 국제환경보호기구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에서 내놓은 환경규격, 환경표시제도, 록색포장규정, 환경허가제, 환경보호기준제, 환경무역제재 등은 비관세장벽으로 리용되고있다. 국제기구들에서 내놓은 환경허가제나 환경무역제재, 환경보호기준제에는 수출국이 환경보호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은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킬수있고 심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수 있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다.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국제기구의 환경보호요구를 지킨다는 명분밑에 그 기준을 릉 가하는 자체의 환경보호기준을 내놓고 수입무역에 적용하고있다.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상품에 식료품의 농약잔유량 및 화학물질함유량기준, 가정용품 및 완구의 위생안전기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는 연료의 함유량 및 배기가스 기준, 포장재료의 분해 및 회수기준, 도자기의 연함유량기준, 오존층보호기준 등과 같은 그들이 도달할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는 국제적인 록색포장규 정의 요구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포장재의 순환식사용과 재리용, 회수리용, 자연적인 분 해 등을 기본징표로 하는 폐설물회수 및 처리법, 포장재폐기처리법 등을 내놓아 발전도 상나라들의 수출무역을 방해하였다.

발전된 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상품에 적용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적인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하에 적용하는것으로 하여 비관세장벽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것이다.

국제무역에서 불명확한 기술적규제조치들의 적용비중이 높아지고있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된다.

그것은 우선 기술적규제조치들의 불명확성이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데서 효과가 높은데 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할당제와 같은 량적제한조치들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성격이 너무도 명백하여 수출국과의 마찰을 일으키기 쉽지만 수입국들이 국내시장에서 상품에 대한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차 고성능,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의 요구 등으로 발전하는것을 리용하여 각종 기술법규들과 규정들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수출국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자국시장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비관세장벽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세계무역기구가 수입국들이 기구의 규정을 우회하여 비관세장벽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명백히 세우지 못한데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기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무역에서 수입국들이 자국산업보호에 유리한 기술무역장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지만 상품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그 적용기준이 구체화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국제무역에서 기술적무역장벽의 적용을 막지 못 하고있다.

실례로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에서는 식량 및 동물먹이에 포 함되여있는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동식물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지만 이것을 구실로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으며 과학적이지 못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여 무역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그러나 수입국이 적용할수 있는 다른 기준 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들이 자체의 수입기 준을 내놓아 다른 나라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데 리용하고있다.

#### 2.2.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의 해결방도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완화하고 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자면 첫째로,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제한조치들 을 관세로 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제한조치들에는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에서 적용하는 조치들과 실지로 수요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조치들이 있다.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자면 이러한 조치들을 다 관세로 전환하는것이다.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전환하면 수출국은 수입국이 적용하는 관세규모에 따라 수 출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인차 결심하고 비생산적인 지출을 막을수 있다.

불명확한 비관세장벽은 수출국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해도 도 달할수 없는 무역장벽이다. 수출국이 설사 그 요구에 맞게 수출품의 성능을 개조하거나 포장과 표시를 개선하였다 하여도 수입국은 수입을 제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새 로운 수입제한조치들을 또 만들어내는것으로 대응하게 된다. 결국 수출국은 수입국의 수입제한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여 수출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 수입제한조치의 관세화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국의 목적을 판단하고 그에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 게 하다.

수입제한조치의 관세화는 수입국의 립장에서도 효과적이다. 비관세장벽을 적용하자 면 수입국은 비관세조치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그 불명확성은 수출국과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켜 수출국과의 앞으로의 무역발전에도 부정적영향을 주게 된다.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 관세의 규모에 따라 수입국은 수입을 마음대로 조종 할수 있을뿐아니라 관세에 의한 외화수입도 늘일수 있으며 수입국의 대치생산기업들은 국내가격상승에 의한 리익도 얻게 된다.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전환하자면 우선 관세부과대상을 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화하는데서 관세부과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여야 할 대상이 명백해집으로써 관세화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다.

수입국은 수입제한규정에 맞지 않는 상품들을 상품의 기술적특성에 따라 관세부과대 상으로 선정하여 어떤 품질의 상품들을 제한하려고 하는가가 명백히 밝혀지도록 하여 야 하다.

수입국이 취하는 품질규제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국은 기술적성능규제, 포장규제, 표시규제, 안전규제, 위생규정 등에 맞지 않는 상품들을 지표별로 세부분류하 여 관세부과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다.

실례로 방직제품인 경우 기술적성능을 고려한 제품, 환경보호규정을 고려한 제품,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을 고려한 제품 등으로 관세부과대상을 선정할수 있다. 또한 기술적 성능을 고려한 방직상품에 대하여 세기와 가늘기, 투과도의 정도에 따라 품종을 더 확대 할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수입상품의 질을 규정하는데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그것을 고려한 상품을 관세부과대상으로 선정할수도 있다. 기계설비는 정밀도를 기본지표로 하여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설비를, 방직제품에서는 가늘기를 기본지표로 하여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을, 금속제품에서는 세기를 기본지표로 하여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을 관세부과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대상이 선정되면 수입을 제한하여야 할 대상이 명백해질수 있다.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전환하자면 또한 관세부과대상에 따르는 관세률을 옳바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전환하는데서 관세부과대상뿐아니라 그 관세률을 얼마만한 규모로 선정하는가는 수입국의 수입제한목적을 명백하게 나타낼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수입제한조치에 따르는 수입상품의 관세률은 수입제한조치로 하여 국내시장에서 일 어나는 같은 품종의 상품공급량과 수요량에서의 변화와 가격변화를 고려하여 적용할수 있다.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의 량을 감소시키거나 수입품의 가격을 등귀시키며 혹은 두가지를 다 겸한 결과를 산생시킨다. 수출국은 비관세장벽의 적용에 의한 복잡한 행정절차, 도달하기 어려운 기술적규제, 위생 및 비위생규정의 적용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은 수출가격의 증가를 가져와 수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산생된 높은 수입가격은 국제시장에서의 같은 품종의 상품가격에 비하여 비싸므로 그 가격차이를 관세률로 환산하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도 실현할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자면 둘째로,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명백히 정의하고 개별적나라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환경을 옳바 로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를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여야 수입국들이 취하는 조치가 비관세장벽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판결할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세계무역기구는 국제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여러 협정에서 수입국이 비관세장벽을 적용할수 없다는 규정을 내놓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 적용을 막지 못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비판세장벽은 국제무역거래량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판세이외의 무역제한조치이다. 다시말하여 비판세장벽은 상품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판세이외의 다른 경제적수단들과 법적 및 행정적조치들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는 수입국이 국내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

여 내놓는 수입제한조치들도 비관세장벽이라고 규정지을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수입국들이 시장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요자들의 요구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비관세장벽을 적용할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자면 그것을 단순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수입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입을 제한하려는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자는 목적에서 가 아니라 해당 나라 상품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하여 국내수요자들의 수요를 릉 가하거나 수출국의 경제발전수준으로써는 도저히 도달할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내놓는 정부의 조치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즉 비관세장벽은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적인 목적에서 취하는 정부의 관세이외의 각종 수입제한조치들이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가 실지로 비관세장벽인 가 아닌가를 가를수 있는 기준으로서 그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또한 수입국이 자국소비자들의 요구나 국제기구들에서 내놓은 규정을 지킬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취하는 조치가 비관세장벽인가 아닌가를 가르는것은 매우 힘들다. 수입국은 자국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자는 목적에서 적용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수출국의 립장에서 그것은 보호무역주의적인 목적에서 적용되는것으로 하여 그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쌍방사이의 립장에서는 매우 어렵다.

국제무역에서는 비관세장벽인가 아닌가를 가르는것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수출국의 기술발전수준으로써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어 수출국 의 불평정도가 높으면 그것은 비관세장벽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성이 부족한 결 론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수출국이 수입국의 조치가 응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입국이 적용할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기 인류가 도달한 과학기술성과와 수출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만일 그것을 릉가하여 내놓는 경우 비관세장 벽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제규격화기구나 그것이 인정한 기구들에서 내놓는 규격에 기초하여 그것을 릉가하지 않는 원칙에서 적용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국의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함으로써 수입국의 조치가 수출국이 접수할수 있는 기준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수입국이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처벌을 줄수 있는 법률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국이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경우 그것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어야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조치를 우회한 불명확한 비관세장벽의 적용을 막을수 있다.

# 3. 결 론

국제무역에서 적용되고있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것은 국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제무역에서 기술적규제조치들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적용비중이 높아지고있는것은 비관세장벽의 수입제한효과가 높고 세계무역기구가 기술적규제조치들의 적용에 관한 기 준을 명백히 하지 않은데로부터 그것을 우회한 기술무역장벽이 적용될수 있는 객관적조 건이 조성된데 있다.

국제무역에서 적용되고있는 비판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자면 수출국과 수입 국의 호상무역발전에도 유리하며 국제무역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수입제한조치들을 관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수입제한조치의 관세화로 수 출국은 수입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비관세장벽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워 수출에서 지 장을 받는 현상을 없앨수 있으며 수입국은 관세에 의한 재정수입효과를 높일수 있는 유 리성이 있다.

국제무역에서 적용되고있는 비관세장벽의 불명확성문제를 해결하자면 세계무역기구가 국제무역에서 적용되고있는 비관세장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주며 수입국이 마음대로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률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무역장벽, 비관세, 관세화